



# 치매전담 요양실 제도의 발전방향

김영희  
(주) 실버프리

# 1. 개요

##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종류 및 이용대상자

i) 의사소견서에 '치매상병'이 기재되어 있거나,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등급 ~ 4등급 수급자

\* 2등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이하 '노장법')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(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) 제외

ii) 5등급 수급자,

iii) 인지지원등급 수급자(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에 한함)

※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,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중 1등급 또는 2등급(노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호)으로 변경된 경우, 등급이 변경된 날부터 입소 중인 해당기관에서 90일까지 이용 가능(변경된 등급의 일반실 수가 적용)

## 2. 시설기준 \*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9

○ (구조)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고,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

○ (규모)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은 **16명** 이하

\* 치매전담실 설치개수 제한은 없으며, 시설 전체를 치매전담실들로만 운영 가능

\* 치매전담실 포함하여 **전체 입소정원 1명당 23.6㎡** 이상의 공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종전과 동일함

○ (세부시설)

- (침실) 치매전담실 종류(가형, 나형)에 따라 면적 기준이 다름. 침실에는 치매노인이 과거 기억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물품 등을 위한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

\* 가형 : 1인실 9.9㎡ 이상, 2인실 16.5㎡ 이상, 3인실 23.1㎡ 이상, 4인실 29.7㎡ 이상

\* 나형 : 1인실 9.9㎡ 이상 (다인실의 경우에는 입소자 1명당 6.6㎡ 이상)

※ 1인실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닌 시설 자율 사항임

- (공동거실) 입소자들이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실을 갖추되, 정원 1명당 1.65m<sup>2</sup>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
- \* 기존과 달리, 거실 면적은 화장실 등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**순수 활동 공간**만 해당
- (기타) 입소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**화장실, 간이욕실(세면대 포함)**을 갖추 것 (단, 개별 침실에 설치된 경우는 제외)

※ '실' 공간(침실, 화장실 등)은 벽면 및 문을 설치하여야 함

○ (세부시설) 치매전담실은 다음 표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

구분 시설별	침실	공동거실						옥외 공간
		화장실	오물 처리	세면 및 간이욕 실	간이 주방	식사 공간	간이세탁 및 수납공간	
치매 전담실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△

(○: 필수, △: 권장)

### 3. 급여비용 및 한시적 지원금 ※ 수가는 2019년 기준 현행화

**치매전담기관 1일당 급여비용: 일반기관대비 약 25%인상**

분류		일반실	치매전담실	
			가형	나형
노인요양시설	장기요양 2등급	64,170	79,140	71,220
	장기요양 3등급 ~ 5등급	59,170	72,970	65,670

## 치매전담기관 한시적 지원금

- (대상)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,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야간 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
  - '22년 12월 31일까지 치매전담기관으로 사업 개시한 기관에 한함
- (지급금액) 다음 금액을 월 1회 산정(급여비용 청구시 지원금 포함하여 청구)
  - (요양시설 및 공생) 수급자 1인당 월 10만원(입소일수가 월 15일 이하인 수급자의 경우 월 5만원)
  - (주야간) 수급자 1인당 월 5만원(이용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수급자의 경우 월 2만5천원)
  - \* 입소일(이용일)에는 고시 제32조 제3항의 미이용일 급여비용 및 제45조 제2항의 외박비용을 산정한 날 포함
- (지급기간) 치매전담기관 수급자에게 최초의 급여를 제공하는 월부터 36개월 ('18년 이전에 사업개시한 기관은 '18년 1월부터 36개월)
  - 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월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, 동 기간도 36개월에 포함

# 치매전담 요양실 운영의 장점과 단점

## 장점

- 일반실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(2.5:1)에 비해 높은 인력 기준(2:1)으로 더 안정적이고 세심한 서비스 제공.
- 전문적인 치매전담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 서비스 질 향상.
- 치매전담 요양실만의 맞춤 프로그램으로 인지능력 및 기능 유지, 향상.
-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자긍심을 높임.
-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.



## 단점

- 치매전담 요양실 비용추가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받아내기 어려움.
- 특례 입소자를 위한 예비병상 불가함.
- 요양보호사 2:1 이상의 가산인력 배치는 무의미함(추가비용 상계 불가함)
- 치매전담 교육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으로 인한 대체 인력 문제
- 치매전담실 요양보호사의 병가 및 경조사, 예기치 않은 휴무 발생시 교육 수료한 요양보호사로의 충원이 어려움.